드론기체파손보험 상품요약서

1. 상품의 특이사항

가. 보험의 목적

1)개인 및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나. 상품의 특이사항

1) 드론 운항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입은 기체 파손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멸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가.보험금 지급사유

보장명		보험금 지급사유
기본계약	드론기체파손담보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루어진 보험증권에 기재된 드론(Drone)의 운항중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기체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선택계약	기체분실, 도난담보	보험기간중 보장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드론(Drone)의 운항중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분실(또는 망실), 도난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해킹담보	보험기간중 보장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드론(Drone)의 운항중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 해킹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로 인한 비용
- 기체 제작사의 보증프로그램이나 각종 수리보장프로그램(리콜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
- 드론을 이용한 곡예비행, 에어쇼로 생긴 손해. 단, 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드론을 이용한 행사(예: 드론파이터), 경기 또는 시합으로 생긴 손해. 단, 회사와 피보험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기체 출고 시 설정된 거리제한 또는 고도 제한을 벗어난 비행으로 발생한 손해
- GPS가 꺼진 상태 또는 기능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조종기 또는 기체에 비행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또는 사고 당시의 비행기록을 조종기 또는 기체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터리 충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
-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의미합니다)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다 생긴 기체 손해.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드론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이익상실, 매출손실, 사업기회의 상실, 데이터 손실, 예정된 예금 또는 이윤의 상실 등의 간접손해

다. 지급보험금 산정방식

- 전손사고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보다 클 경우 보험가액)에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분손사고 :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용에서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동 위험을 담보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3. 보험료 산출 예시

- 보험기간 : 1년
- 보험조건 : 드론기체파손담보
- 기체가액 : 1천만원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0만원
- 보험료 : 510,000원

※ 상기 보험료는 요율 변동 및 보험가입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산출기초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5.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1)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2) 그 밖의 해지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7.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대신 다른 드론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보험금을 현물(드론)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경우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동일모델의 리퍼비쉬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리퍼비쉬 제품의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파손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